

1. 개정이유

개산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계약상 이익의 부당한 제한이 없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개산계약금액 조정기준 개선(안 제4조의2)

- 1) 현재 물가변동, 설계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개산계약금액 조정은 기존 대비 100분의 5 이상의 증감 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, 100분의 5 미만에 대한 조정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해석 및 적용상 이견 및 분쟁 가능성이 상존함.
- 2) 이에 증감 규모와 관계없이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의2(개산계약금액의 조정)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3절·제4절·제4절의2·제5절·제6절·제9절 및 제10절에 따라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행기간 중 물가변동, 설계변동,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의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4조의2(개산계약금액의 조정)</u> ① <u>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3절 · 제4절 · 제4절의2 · 제5절 · 제6절 · 제9절 및 제10절에 따라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행기간 중 물가변동, 설계변동,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등에 따라 예산소요가 증감하여 개산계약금액(概算契約金額)으로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할 때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조정 시점까지의 실제발생원가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.</u>	<u>제4조의2(개산계약금액의 조정)</u> <u>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3절 · 제4절 · 제4절의2 · 제5절 · 제6절 · 제9절 및 제10절에 따라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행기간 중 물가변동, 설계변동,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의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</u>